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광주고등법원 2016. 9. 6. (전주)2016노50]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안형준(기소), 정용수, 강남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외 3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5고합139, 2015고합151(병합) 판결

【주문】

1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피고인 1(이하 해당 피고인에 대한 항목 설시에서 해당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피고인을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내정자로서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대학교를 장애인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자 장애인 체육특기생(이하 '장애인 특기생'이라고만 한다)을 입학시키도록 지시하였을 뿐국가장학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석면제, 대리시험 등 제반 학사행정이나 장학금 신청행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 2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① 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2억 2,000만 원 및 홈플러스 상품권 1,000만 원을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받았으나, 2013. 12. 27.자 8,000만 원, 2013. 12. 30. 및 2014. 1. 20.자 각 1,000만 원, 2015. 1. 30.자 6,000만 원, 2015. 2. 5.자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은 개인간의 별개의 거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뿐 ○○대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②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3에게 교부한 미화 5,000달러는 피고인 3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직무상 어떠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피고인 3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①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 피고인이 2012. 7.경 피고인 2로부터 책을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나, 책 속에는 미화 4,000달러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 ②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2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시 교육청 기획조 정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의 수수 당시 이미 교육부 대학정 책과장의 지위를 떠나 ▽▽시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대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의 교부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어떠한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 피고인 4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①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②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장애인 특기생 모집이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사장 내정자인 피고인 1이 적극 추진을 지시하므로, 관련 교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장'이라는 지위에서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4. 7. 10. 총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4년도 2학기부터는 음악대학 교수로 복귀하여 ○○대학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장애인 특기생들의 학사관리나 장학금 청구 등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은 2014. 7. 11.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당시 재학 중인 장애인 특기생들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단지 학교법인 상무이사의 지위를 가진 것에 불과하여 2014년도 장애인 특기 신입생 모집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편취 부분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결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2013. 11.경 피고인 6 및 공소외 2가 △△학원에서 피고인 1 등에게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장애인 특기생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4년도 2학기부터의 국가장학금 편취 부분도 기존의 장애인 특기생 모집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결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6) 피고인 6, 피고인 7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장애인스포츠단을 신설하고 ○○대학교를 장애인 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피고인 1 이사장, 피고인 4 총장 등 학교관계자들의 약속을 믿고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였을 뿐이지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유령학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결국, ○○대학교가 장애인 관련학과 신설, 기숙사 제공, 장애인스포 츠단 신설 등 제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학사행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학교 측과 공모하여 비자발적인 위장 내지 유령학생을 모집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 가) 2012. 8.경 내지 2012. 11.경 일화 100만 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 피고인 2가 위 일시경 피고인 3에게 일화 100만 엔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2013. 8.경 미화 21,83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3에게 미화 21,830달러를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중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부분만 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인 2의 알선수재의 점
-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적·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금원 중 2억 원은 개인간의 별개의 거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 또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노회는 ○○대학교의 전신인 ◇◇전문대학을 인수하여 2001. 6. 30. 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설립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수익용 기본재산 74억 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 그런데 ◇◇노회는 2004. 11.경 2개의 노회(◇◇노회, ☆☆노회)로 양분되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연차별로 확보하기로 한 수익용 기본재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2013. 3.경 교육 부문이 분리되어 교육부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 이하 직제 개편 전후를 불문하고 '교육부'라고만 한다)로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방안을 주관하고 있었으며, 2011. 9.경에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② 피고인은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무렵인 2012. 7.경 당시 인수희망자이던 공소외 3에게 인수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5억 원 (= 담당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초기비용 3억 원 +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후 답례비용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을 가장하여 3%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3차례에 걸쳐 2억 4.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 ③ 피고인은 2012. 7. 12.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5,250만 원 중 일부를 미화로 환전하여 그 중 미화 4,000달러를 책 속에 넣어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장인 피고인 3에게 ○○대학교 인수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제공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도 2014. 4.경까지 피고인 3에게 수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④ 그런데 공소외 3이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이 예정대로 출연되지 않는 등 ○○대학교 인수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게 되어 2012. 7.경 내지 2012. 8.경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되었다.
- ⑤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대학교 인수가 무산되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았던 로비자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한편 인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로비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5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우선 2012. 9.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2012. 9. 초순경 익산시 (주소 생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서 피고인 2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2가 '○○대학교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인수하시려면 제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로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2가 저한테 '○○대학교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인수하시려면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활동을 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시고 로비자금 5억 원을 보내달라'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피고인 2가 5명인가를 만나서 로비활동을 해야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교육부 대학정책과에 근무하는 피고인 3을 만나고, 같은 교육부 전문대정책과 공소외 6 과장, 당시 ▽▽대법인화 담당 공소외 7 과장, 국회의 공소외 8 홍보기획관을 만나야 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51호 수사기록 제3081, 3082쪽, 이하 지칭하는 수사기록에따로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은 위 사건번호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과 나는 대화 내용으로서 그 일시 및 장소, 피고인이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는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 1의 진술은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1은 피고인의 로비활동 초기단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수수하는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 ⑥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 ◇◇기독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 12.경 및 2014. 1.경 피고인 1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1이 공소외 9로부터 빌려 위 수협은행계좌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원(= 2013. 12. 27. 8,000만 원 + 2013. 12. 30. 및 2014. 1. 20. 각 1,0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일이 피고인 1로부터 사전동의나 사후승낙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1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내역을 일일이 따지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 어차피 향후에 주더라도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조건(◇◇기독학원의 인수)이 성취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공판기록 제352, 356, 369쪽),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시점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다.
-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과 피고인 1 사이에 위 금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⑧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4. 2.경 피고인 1에게 찾아가 그 동안 학교법인 인수에 들어간 비용이 많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으니 2억 원과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로 보상해달라고 하였고(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5. 1.경에도 피고인 1과 사이에 그와 관련한 이유로 다투었으며, 2015. 1. 2.에는 나머지돈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자 그 동안의 로비나 부정행위 등을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1에게 '오늘 이사회 모든 분에게 음성 발송하마'라고 하는 등 다소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⑨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1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2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015. 1. 30. 6,000만 원, 2015. 2. 4. 4,000만 원, 합계 1억원을 교부하였다.
- 한편,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5. 1. 30.자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조치원 소재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준 돈이고, 2015. 2. 4.자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8,0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나누어주었으나 당좌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이 쓴 돈까지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가 없고, 그 후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다[피고인 1은 원심에서 "저는 제가 약속한 금액에서 그 금액 5억 원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 것은 맞습니다.
- 그런데 중간에 어떤 필요한 특정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는 대로 준 것은 맞지만 최초에 말한 5억 원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 초반에 또 제가 2억 원 가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재판장의 "그러면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피고인 2 씨가 미리 자기 돈 로비활동비로 쓰고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줄 돈이라고 생각해서 준 것인가요. 저 사람이 먼저 선 활동비로 자기가 자기 돈을 쓰고 미안했다는 게 그거 아닌가요. 5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으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75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금원은 지급 당시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환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원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앞서 본 알선의 내용과 약정한 대가, 피고인과 피고인 1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요구한 대가의 내용과 금품의 수수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일련의 금원 합계 4억 3,000만 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합계 2억 원을 외형상 빌리거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여 주기로한 당초의 약정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위 합계 2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의 수수에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합계 2억 원에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 (3)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3의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 1) 원심의 판단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미화 4,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① 피고인 2가 자신의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로 체포, 구속된 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새롭게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② 피고인 2가 털어놓은 진술의 내용은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책자 등 진술 후에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2가 그 후의 조사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정리하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2는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과는 이미 이해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굳이 뇌물 공여죄로 기소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2가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2012. 7.경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마당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단지 책을 주기 위하여 만났다기보다는 향후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 "도서와 관련하여서는 계속 조사를 받고, 피고인 2 교수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어렴풋이 책 속에 얇은 봉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중략)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책 속에 있던 봉투의 금액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4단 정도 크기의 책꽂이 위에 올려놓았던 것까지는 기억합니다.
- (중략) 어제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2 교수가 너무 확실하게 진술하고, 저도 어렴풋이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났고, 책 속에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점점 확실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그만 봉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사무실은 2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과장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봉투 채로 책꽂이에 올려놓은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84 내지 6086쪽).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책 속에 봉투가 들어있었다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봉투 안의 내 용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에 비추어 피고 인 2가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책 속에 봉투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끼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 봉투 속에 금품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 ② 한편, 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2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화 4,000달러를 교부하였다고 너무나 생생하게 진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했더니, 검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식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 그런 경우에 7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과 회유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2 교수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는 등 검찰 편을 들어 굉장히 겁이 나서 일단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봉투가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추후 법정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5권 피고인신문조서 제7, 8쪽).
-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미화 4,000달러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이외에 피고인이 수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나 변호인의 협박 또는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작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 또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 다.

-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알게 된 2012. 7.경 피고인 3은 교육부 대학선진화과장(2013. 3.경 '대학정책과장'으로 직책 명칭이 변경됨)으로 재직하였다.
- 그런데 교육부 대학지원실(현재 대학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 등이 있는데, 대학정책관 아래에는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학정책과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사립대학제도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며, 피고인 3이 근무하던 대학정책과는 위 각 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 ② ○○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2009. 7. 7.부터 교육부에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 정위원회가 그 정상화 방안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 ◇◇기독학원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던 ☆☆노회와 ◇◇노회는 2011. 9.경부터 ○○대학교를 운영할 제3자 영입을 모색하게 되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게 ○○대학교 인수를 권유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2. 7.경 피고인 1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1의 ○○대학교 인수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 ③ 한편 피고인 2는 2012. 7.경 피고인 3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 3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2와 함께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상의하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쟁점과 결과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 ④ 피고인 3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고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기도 하였다(특히 피고인 3은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기 전인 2014. 1. 4. 피고인 2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 ⑤ 피고인 1은 2014. 1. 16.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3은 2014. 3. 17.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1은 2014. 3. 31. ◇◇기독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4. 4.경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에 찾아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였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이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금품 지급에 관한 조사가 선행된 후) "피의자는 이외에도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이 더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인 3이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2014년 초순경 ▽▽시 기조실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제가 '그 동안 교육부에 계시면서 ◇◇기독학원을 인수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 '는 취지로 5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직접 위 ▽▽시청 기조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피고인 3이 있어서 500만원을 달러로 바꾼 돈을 하얀 봉투에 넣어서 건네주었더니 피고인 3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처럼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피고인 3이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10, 공소외 6 서기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학교에서 제3자 영입을 하는 데 어떤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 등을 저한테 알려주었고, 저희 ○○대학교가 향후 퇴출대학에서 벗어나는 데 교육부 방침이나 지침,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예를 들면 직원 및 교직원 등을 얼마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등) 정보등을 저한테 알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791쪽).
- ② 피고인 3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2014. 3.경 피고인 1로부터 팽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불만이 많아 피고인 1과는 업무적,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가 2014. 4.경 자신에게 피고인 1의 ○○대학교 인수와 관련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4. 3.경 내지 2014. 4.경을 전후하여서 도 서로 업무적인 관계나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244 내지 3289쪽),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뒤에도 서로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223 내지 4234쪽).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한 2014. 4.경 피고인 1과의 사이가 틀어져 ○○대학교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4. 2.경 피고인 1로부터 로비자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관한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는 등 로비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의 2014. 2. 27.자 문자메시지 내용("오늘 사분회 결과 전화주세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위한 업무를 그만 둘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 단절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 ③ 피고인 3이 당시 교부받은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30만 원 상당)는 공무원의 신분에 비추어 고액으로서, 설령 위금원의 교부에 승진축하금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 3의 과거 및 현재 직무의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금품의 수수 경위 및 시기, 공여된 금품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3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 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승진축하금이라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뇌물공여의 점

-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당시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고인 3과 친분이 있었고, 교육부에 있는 피고인 3의 사무실에 종종 들러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대학교 대외협력팀장인 피고인 2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기독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던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어 서로 잘 알고지내던 사이였다.
- 따라서 피고인 2가 ○○대학교의 인수와 관련한 로비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금원을 교부하려고 한다는 사용처를 굳이 숨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이라는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3,000만 원이 피고인 3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계속하여 부인하던 중 "사실은 제가 대출해 준 3,000만원이 피고인 3에게 건너가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8. 12. 피의자가 대출해 준 돈이 피고인 3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알면서 3,000만 원 대출받아 줬습니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어제 조사받고 집에 가서도 잠 한 숨 자지 못했습니다.
- 교육자로서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2가 3,000만원을 어 디에 쓸 것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교육부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교육부 다녀온다'는 말은 저와 피고인 2 사이에 피고인 3 만나고 온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3에게 주는 돈이면 결국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부정한 돈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런 부정한 용도로 쓰일 줄 알면서 피의자는 왜 대출을 받아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대 인수자로 피고인 1이 유력했고, 피고인 2가 전화하여 앞으로 이사장이 될 피고인 1의 부탁이라고 하기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380 내지 4385쪽).
-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거듭 부인하였으나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2와 마주치게 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교육자로서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등 진술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감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범행을 시인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사기의 점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국가장학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판단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 가) 관련법리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4, 피고인 6 및 공소외 11(당시 학사운영처장), 공소외 12(당시 세무물류학과 교수), 공소외 13(당시 산학협력 처장) 등은 2013. 10.경 ○○대학교 본관에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에 관한 보직교수회의를 열어 2014 입학년도부

터 장애인 특기생을 대거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할 예정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4 등의 제안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인 학교 시설이나 훈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대학교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4, 피고인 6은 ○○대학교의 시설여건이나 행정절차상 2014년도 1학기부터 당장 장애인 특기생을 입학시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 ② 한편, 2013. 10.경 회의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13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11이 '우리 ○○대학교는 입학생 충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이제 우리 ○○대학교는 살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당시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 그 타개책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 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60, 961쪽), 공소외 12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장애인 특기생모집의 1차적 목적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40쪽).
- ③ 피고인 1은 ○○대학교를 인수하기 전인 2013년 여름경부터 이미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각종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2013.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시흥시 소재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2로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여 ○○대학교를 장애인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학교법인 상무이사인 피고인 5 및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4 등이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이 전무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 2014년도 1학 기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학생 수의 충원을 통한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을 지시하였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피고인 1(이하 해당 피고인에 대한 항목 설시에서 해당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피고인을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내정자로서 대학정상화를 위하여 ○○대학교를 장애인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자 장애인 체육특기생(이하 '장애인 특기생'이라고만 한다)을 입학시키도록 지시하였을 뿐국가장학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출석면제, 대리시험 등 제반 학사행정이나 장학금 신청행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알선수재의 점
-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2억 2,000만 원 및 홈플러스 상품권 1,000만 원을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받았으나, 2013. 12. 27.자 8,000만 원, 2013. 12. 30. 및 2014. 1. 20.자 각 1,000만 원, 2015. 1. 30.자 6,000만 원, 2015. 2. 5.자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은 개인간의 별개의 거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뿐 ○○대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②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3에게 교부한 미화 5,000달러는 피고인 3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직무상 어떠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피고인 3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①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 피고인이 2012. 7.경 피고인 2로부터 책을 선물받은 것은 사실이나, 책 속에는 미화 4,000달러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②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인 2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시 교육청 기획조 정실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원의 수수 당시 이미 교육부 대학정 책과장의 지위를 떠나 ▽▽시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대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의 교부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어떠한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 피고인 4
 -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①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②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장애인 특기생 모집이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사장 내정자인 피고인 1이 적극 추진을 지시하므로, 관련 교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장'이라는 지위에서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 또한 피고인이 2014. 7. 10. 총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4년도 2학기부터는 음악대학 교수로 복귀하여 ○○대학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장애인 특기생들의 학사관리나 장학금 청구 등 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은 2014. 7. 11.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당시 재학 중인 장애인 특기생들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단지 학교법인 상무이사의 지위를 가진 것에 불과하여 2014년도 장애인 특기 신입생 모집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편취 부분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결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2013. 11.경 피고인 6 및 공소외 2가 △△학원에서 피고인 1 등에게 장애인 특기생 모집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장애인 특기생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4년도 2학기부터의 국가장학금 편취 부분도 기존의 장애인 특기생 모집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결여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6) 피고인 6, 피고인 7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장애인스포츠단을 신설하고 ○○대학교를 장애인 스포츠 육성대학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피고인 1 이사장 , 피고인 4 총장 등 학교관계자들의 약속을 믿고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였을 뿐이지 재학생 충원율을 인위적으로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높이기 위하여 유령학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결국, ○○대학교가 장애인 관련학과 신설, 기숙사 제공, 장애인스포 츠단 신설 등 제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학사행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학교 측과 공모하여 비자발적인 위장 내지 유령학생을 모집하여 국가장학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1) 사실오인
- 가) 2012. 8.경 내지 2012. 11.경 일화 100만 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2, 피고인 3)
- 피고인 2가 위 일시경 피고인 3에게 일화 100만 엔을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2013. 8.경 미화 21,83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가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3에게 미화 21,830달러를 뇌물로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도 그 중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부분만 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인 2의 알선수재의 점
- 1) 워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체적·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1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금원 중 2억 원은 개인간의 별개의 거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제공과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대법

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32 판결 등 참조).

- 또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그런데 ◇◇노회는 2004. 11.경 2개의 노회(◇◇노회, ☆☆노회)로 양분되어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연차별로 확보하기로 한 수익용 기본재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09. 7.경 교육과학기술부(2013. 3.경 교육 부문이 분리되어 교육부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 이하 직제 개편 전후를 불문하고 '교육부'라고만 한다)로부터 학교법인의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상화방안을 주관하고 있었으며, 2011. 9.경에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② 피고인은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공개모집할 무렵인 2012. 7.경 당시 인수희망자이던 공소외 3에게 인수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교육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5억 원 (= 담당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등 초기비용 3억 원 +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후 답례비용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공소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컨설팅 용역계약 대금을 가장하여 3%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3차례에 걸쳐 2억 4,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 ③ 피고인은 2012. 7. 12.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5,250만 원 중 일부를 미화로 환전하여 그 중 미화 4,000달 러를 책 속에 넣어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선진화과장인 피고인 3에게 ○○대학교 인수에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제공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도 2014. 4.경까지 피고인 3에게 수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④ 그런데 공소외 3이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이 예정대로 출연되지 않는 등 ○○대학교 인수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은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게 되어 2012. 7.경 내지 2012. 8.경 공소외 5를 통하여 피고인 1을 소개받아 서로 알게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되었다.

- ⑤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대학교 인수가 무산되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았던 로비자금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한편 인 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로비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우선 2012. 9.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2012. 9. 초순경 익산시 (주소 생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서 피고인 2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 2가 '○○대학교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인수하시려면 제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2가 저한테 '○○대학교학교법인 ◇◇기독학원을 인수하시려면 제가 사람들을 만 나고 로비활동을 하는 데 5억 원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시고 로비자금 5억 원을 보내달라'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피고인 2가 5명인가를 만나서 로비활동을 해야된다고 말을 하 였는데, 교육부 대학정책과에 근무하는 피고인 3을 만나고, 같은 교육부 전문대정책과 공소외 6 과장, 당시 ▽▽대 법인화 담당 공소외 7 과장, 국회의 공소외 8 홍보기획관을 만나야 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151호 수사기록 제3081, 3082쪽, 이하 지칭하는 수사기록에 따로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은 위 사건번호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서 그 일 시 및 장소, 피고인이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는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 1의 진술은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1은 피고인의 로 비활동 초기단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수수하는 것을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 된다1.
- ⑥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 ◇◇기독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 12.경 및 2014. 1.경 피고인 1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1이 공소외 9로부터 빌려 위 수협은행계좌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원(= 2013. 12. 27. 8,000만 원 + 2013. 12. 30. 및 2014. 1. 20. 각 1,0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일이 피고인 1로부터 사전동의나 사후승낙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1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내역을 일일이 따지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 ⑦ 또한,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3. 12. 27.자 8,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반면에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가 없고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갚는다, 안갚는다 그런 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 어차피 향후에 주더라도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고, 나중에 조건(◇◇기독학원의 인수)이 성취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이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공판기록 제352, 356, 369쪽),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시점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다.
-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과 피고인 1 사이에 위 금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⑧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14. 2.경 피고인 1에게 찾아가 그 동안 학교법인 인수에 들어간 비용이 많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으니 2억 원과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로 보상해달라고 하였고(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5. 1.경에도 피고인 1과 사이에 그와 관련한 이유로 다투었으며, 2015. 1. 2.에는 나머지돈의 지급에 관하여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자 그 동안의 로비나 부정행위 등을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1에게 '오늘 이사회 모든 분에게 음성 발송하마'라고 하는 등 다소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 ⑨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1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2억 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피고인에게 2015. 1. 30. 6,000만 원, 2015. 2. 4. 4,000만 원, 합계 1억원을 교부하였다.
- 한편, 피고인 1은 원심에서, 2015. 1. 30.자 6,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의 조치원 소재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준 돈이고, 2015. 2. 4.자 4,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8,0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절반인 4,000만 원을 나누어주었으나 당좌기일이 도래하자 피고인이 쓴 돈까지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가 없고, 그 후 변제를 독촉한 바도 없다[피고인 1은 원심에서 "저는 제가 약속한 금액에서 그 금액 5억 원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채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 것은 맞습니다.
- 그런데 중간에 어떤 필요한 특정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지는 대로 준 것은 맞지만 최초에 말한 5억 원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 초반에 또 제가 2억 원 가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재판장의 "그러면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피고인 2 씨가 미리 자기 돈 로비활동비로 쓰고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줄 돈이라고 생각해서 준 것인가요. 저 사람이 먼저 선 활동비로 자기가 자기 돈을 쓰고 미안했다는 게 그거 아닌가요. 5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못 줬으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375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금원은 지급 당시의 명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환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원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앞서 본 알선의 내용과 약정한 대가, 피고인과 피고인 1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고인 1에게 요구한 대가의 내용과 금품의 수수경위 및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일련의 금원 합계 4억 3,000만 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 합계 2억 원을 외형상 빌리거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여 주기로한 당초의 약정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위 합계 2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의 수수에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합계 2억 원에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3의 2012. 7.경 미화 4,000달러 뇌물수수의 점
-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2012. 7.경 피고인에게 미화 4,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① 피고인 2가 자신의 알선수재 등 범죄혐의로 체포, 구속된 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새롭게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죄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② 피고인 2가 털어놓은 진술의 내용은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책자 등 진술 후에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에도 상당히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2가 그 후의 조사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과정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더듬고 정리하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2는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과는 이미 이해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굳이 뇌물 공여죄로 기소된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2가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2012. 7.경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마당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이던 피고인을 단지 책을 주기 위하여 만났다기보다는 향후 각종 편의제공을 위하여 뇌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 "도서와 관련하여서는 계속 조사를 받고, 피고인 2 교수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어렴풋이 책 속에 얇은 봉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중략)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책 속에 있던 봉투의 금액은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4단 정도 크기의 책꽂이 위에 올려놓았던 것까지는 기억합니다.
- (중략) 어제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2 교수가 너무 확실하게 진술하고, 저도 어렴풋이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났고, 책 속에 얇은 봉투가 있었던 것은 점점 확실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그만 봉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은 2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과장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봉투 채로 책꽂이에 올려놓은 기억이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84 내지 6086쪽).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책 속에 봉투가 들어있었다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에 비추어 피고인 2가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공무원을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책 속에 봉투가 끼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 봉투 속에 금품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 ② 한편, 피고인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2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화 4,000달러를 교부하였다고 너무나 생생하게 진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했더니, 검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식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5,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 그런 경우에 7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과 회유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또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2 교수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는 등 검찰 편을 들어 굉장히 겁이 나서 일단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봉투가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추후 법정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5권 피고인신문조서 제7, 8쪽).
-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미화 4,000달러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이외에 피고인이 수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나 변호인의 협박 또는 회유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작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2014. 4.경 미화 5,000달러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 또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 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 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알게 된 2012. 7.경 피고인 3은 교육부 대학선진화과장(2013. 3.경 '대학정책과장'으로 직책명칭이 변경됨)으로 재직하였다.
- 그런데 교육부 대학지원실(현재 대학정책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 등이 있는데, 대학정책관 아래에는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학정책과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사립대학제도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며, 피고인 3이 근무하던 대학정책과는 위 각 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 ② ○○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미확보를 이유로 2009. 7. 7.부터 교육부에서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사학분쟁조 정위원회가 그 정상화 방안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 ◇◇기독학원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있던 ☆☆노회와 ◇◇노회는 2011. 9.경부터 ○○대학교를 운영할 제3자 영입을 모색하게 되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게 ○○대학교 인수를 권유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2. 7.경 피고인 1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1의 ○○대학교 인수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 ③ 한편 피고인 2는 2012. 7.경 피고인 3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 3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2와 함께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대학교 인수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상의하거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쟁점과 결과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피고인 3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고 향응이나 접대를 제공받기도 하였다(특히 피고인 3은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기 전인 2014. 1. 4. 피고인 2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기도 하였다).
- ⑤ 피고인 1은 2014. 1. 16. 학교법인의 재정기여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3은 2014. 3. 17.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1은 2014. 3. 31. ◇◇기독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4. 4.경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에 찾아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였다.

- (2) 이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금품 지급에 관한 조사가 선행된 후) "피의자는 이외에도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이 더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피고인 3이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2014년 초순경 ▽▽시 기조실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제가 '그 동안 교육부에 계시면서 ◇◇기독학원을 인수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 '는 취지로 5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직접 위 ▽▽시청 기조실에 찾아갔더니 사무실에 피고인 3이 있어서 500만원을 달러로 바꾼 돈을 하얀 봉투에 넣어서 건네주었더니 피고인 3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처럼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말씀드린대로 피고인 3이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10, 공소외 6 서기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대학교에서 제3자 영입을 하는 데 어떤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 등을 저한테 알려주었고, 저희 ○○대학교가 향후 퇴출대학에서 벗어나는 데 교육부 방침이나 지침,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예를 들면 직원 및 교직원 등을 얼마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 등) 정보등을 저한테 알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791쪽).
- ② 피고인 3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2014. 3.경 피고인 1로부터 팽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불만이 많아 피고인 1과는 업무적,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가 2014. 4.경 자신에게 피고인 1의 ○○대학교 인수와 관련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4. 3.경 내지 2014. 4.경을 전후하여서 도 서로 업무적인 관계나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244 내지 3289쪽), 이 사건 수사가 가 개시되고 난 뒤에도 서로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223 내지 4234쪽).
-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한 2014. 4.경 피고인 1과의 사이가 틀어져 ○○대학교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4. 2.경 피고인 1로부터 로비자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관한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는 등 로비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의 2014. 2. 27.자 문자메시지 내용("오늘 사분회 결과 전화주세요")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위한 업무를 그만 둘 정도로 서로 간의 관계 단절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 ③ 피고인 3이 당시 교부받은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30만 원 상당)는 공무원의 신분에 비추어 고액으로서, 설령 위금원의 교부에 승진축하금 명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3)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 3의 과거 및 현재 직무의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금품의 수수 경위 및 시기, 공여된 금품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3이 ▽▽시 교육청 기획조정실 장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승진축하금이라는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이 사건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의 뇌물공여의 점

- 1)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당시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고인 3과 친분이 있었고, 교육부에 있는 피고인 3의 사무실에 종종 들러 만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대학교 대외협력팀장인 피고인 2를 소개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에게 ◇◇기독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던 피고인 1을 소개하여 주어 서로 잘 알고지내던 사이였다.
- 따라서 피고인 2가 ○○대학교의 인수와 관련한 로비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금원을 교부하려고 한다는 사용처를 굳이 숨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이라는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3,000만 원이 피고인 3에게 교부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계속하여 부인하던 중 "사실은 제가 대출해 준 3,000만원이 피고인 3에게 건너가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지금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3. 8. 12. 피의자가 대출해 준 돈이 피고인 3에게 로비자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알면서 3,000만 원 대출받아 줬습니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제 조사받고 집에 가서도 잠 한 숨 자지 못했습니다.

- 교육자로서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2가 3,000만원을 어 디에 쓸 것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교육부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교육부 다녀온다'는 말은 저와 피고인 2 사이에 피고인 3 만나고 온다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3에게 주는 돈이면 결국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부정한 돈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이런 부정한 용도로 쓰일 줄 알면서 피의자는 왜 대출을 받아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당시 분위기는 ○○대 인수자로 피고인 1이 유력했고, 피고인 2가 전화하여 앞으로 이사장이 될 피고인 1의 부탁이라고 하기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4380 내지 4385쪽).
-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심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거듭 부인하였으나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2와 마주치게 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교육자로서 양심과 신앙인으로서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등 진술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감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범행을 시인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의 사기의 점
-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국가장학금 편취 범행을 상호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4, 피고인 6 및 공소외 11(당시 학사운영처장), 공소외 12(당시 세무물류학과 교수), 공소외 13(당시 산학협력 처장) 등은 2013. 10.경 ○○대학교 본관에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에 관한 보직교수회의를 열어 2014 입학년도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대거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할 예정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4 등의 제안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일반적인 학교 시설이나 훈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대학교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4, 피고인 6은 ○○대학교의 시설여건이나 행정절차상 2014년도 1학기부터 당장 장애인 특기생을 입학시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 ② 한편, 2013. 10.경 회의에 참석하였던 공소외 13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11이 '우리 ○○대학교는 입학생 충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이제 우리 ○○대학교는 살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당시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 그 타개책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 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60, 961쪽), 공소외 12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장애인 특기생모집의 1차적 목적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40쪽).
- ③ 피고인 1은 ○○대학교를 인수하기 전인 2013년 여름경부터 이미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각종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2013.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시흥시 소재 △△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6 및 공소외 2로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여 ○○대학교를 장애인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당시 학교법인 상무이사인 피고인 5 및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4 등이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 1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이 전무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 2014년도 1학 기부터 장애인 특기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학생 수의 충원을 통한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장애인 특기생의 모집을 지시하였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